

## [밀양강 푸르지오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]

### ■ 공급개요

- 주택명 : 밀양강 푸르지오
- 사업장 위치 :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512-1 외 15필지
- 공급규모 : 지하2층, 지상29층 아파트 6개동 총 523세대
- 주택형 : , 74㎡, 84㎡A, 84㎡B

### ■ 특별공급 일정

구분	일자	참고사항
입주자모집공고	2017.07.28.(금)	푸르지오 홈페이지내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
모델하우스개관	2017.07.28.(금)	평택시 비전동 1102-3번지
접수일자	2017.08.02.(수) 10:00~14:00	전본주택 방문접수(인터넷 청약접수 불가)
당첨자발표	2017.08.02.(수) 16:00	당사 견본주택에 게재
동호수 발표	2017.08.10.(목)	당사 견본주택에 게재

\*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당사 홈페이지(www.prugio.com)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\*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 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통사항

구분	내용
1회 한정 / 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.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</li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.</li> </ul>
무주택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.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(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)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각각 신청,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.(당첨자 명단관리, 계약체결 불가)</li> <li>*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(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</li> <li>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</li> <li>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청약자격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</li> <li>- 기관추천 특별공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은 제외)</li> <li>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li>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li>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(단,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아파트투우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)</li> <li>*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.</li> <li>*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(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)</li> </ul>

■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신청 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일반 (기관추천) 특별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2호 (국가유공자), 3호(국가보훈대상자), 8호(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,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)에 해당 하는 자 중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</li> <li>청약자격요건 : 청약물량 가입기간 6개월 이상 (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(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제외)</li> </ul> <p>※ 추천기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 : 지역 장애인복지과</li> <li>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: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</li> <li>장기복무 제대군인·국가유공자·국가보훈대상자 : 지역보훈지청</li> <li>중소기업 장기근속자 : 지방중소기업청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시에 홍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수배정) 및 계약 불가]</li> <li>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</li> <li>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. -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전체임.</li> <li>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(평택시) 거주자가 우선함.</li> </ul>

※ 당첨자 선정(공고) 유의사항

-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,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.
-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,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.(동·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)

※ 특별공급의 추천순서는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, 신혼부부 특별공급,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천함.

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3항 [별표2]

구분	밀양시 /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
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	400만원	6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400만원	700만원	1,000만원
모든 면적	500만원	1,000만원	1,500만원

㉡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	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○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종된 서명 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
	○		주민등록증	본인	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	○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 (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

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
	○	청약통장순위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(www.ap2you.com)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(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)
일반 (기관추천) 특별공급	○	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	본인	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(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)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인감증명서	청약자	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/ 용도 :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인감도장	청약자	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주민등록증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	○	인장	대리인	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기간산점, 배우자 관계 확인 등 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■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·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

특별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·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·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.</li> <li>-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,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.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.</li> <li>-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.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.</li> <li>-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,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.</li> <li>-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.</li> <li>-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,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. (신청자, 배우자,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</li> <li>-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,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.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.</li> <li>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.</li> <li>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(1회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</li> </ul>